

# 신체검사 기준

## 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】 -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

### 1. 일반결함

- 가.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
- 나. 고혈압성 응급증

### 2. 비강(鼻腔)·구강·인후기관 계통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·구강·인후·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

### 3. 흉부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

### 4. 심장·혈관 및 순환기 계통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

### 5.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

### 6. 생식비뇨기 계통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

### 7. 내분비 계통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

### 8. 혈액 또는 조혈 계통

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

### 9. 신경 계통

- 가. 뇌졸중(腦卒中)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- 나.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
- 다. 만성 진행성·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(腦脊髓炎)[유전성 무도병(舞蹈病: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), 근위축성 측색경화증, 소뇌성운동실조증(小腦性運動失調症)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]

라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

- 1) 뇌종양 및 척수종양
- 2) 외상성 신경질환
- 3) 말초신경질환
- 4) 전신성의 신경근(神經筋) 접합부 질환
- 5)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
- 6) 뇌전증(腦電症)(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)

## 10. 팔다리

- 가.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(어깨·팔·손) 장애
- 나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

## 11. 귀

-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

## 12. 눈

-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, 시야 장애,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

## 13. 정신 계통

- 가.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
- 나.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

**【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】**

○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

| 검사항목           | 불합격 기준(최초검사)  |
|----------------|---|
| 가. 일반 결함       | 1)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<br>2) 중증인 고혈압증(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이고,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경우)<br>3)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,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             |
| 나. 코·구강·인후 계통  |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·구강·인후·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 |
| 다. 피부 질환       |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  |
| 라. 흉부 질환       |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<br>2) 활동성 폐결핵, 비결핵성 폐질환, 중증 만성천식증, 중증 만성기관지염, 중증 기관지확장증<br>3) 만성 폐쇄성 폐질환   |
| 마. 순환기 계통      | 1) 심부전증<br>2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(분당 150회 이상)이나 기질성 부정맥<br>3) 심한 방실전도장애<br>4) 심한 동맥류<br>5) 유착성 심낭염<br>6) 폐성심<br>7) 확진된 관상동맥질환(협심증 및 심근경색증)                    |
| 바. 소화기 계통      | 1)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<br>2)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<br>3) 거대결장, 게실염, 회장염,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 |
| 사.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 | 1) 만성 신장염<br>2) 중증 요실금<br>3) 만성 신우염<br>4)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<br>5)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<br>6) 고도의 요도협착<br>7)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<br>8)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|
| 아. 내분비 계통      | 1)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<br>2)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<br>3) 애디슨병<br>4) 그 밖에 쿠싱증후군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<br>5) 중증인 당뇨병(식전 혈당 140 이상) 및 중증의 대사질환(통풍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검사항목          | 불합격 기준(최초검사)   |
|---------------|--|
| 자. 혈액이나 조혈 계통 | 1) 혈우병<br>2)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<br>3)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<br>4) 용혈성 빈혈(용혈성 황달)<br>5) 진성적혈구 과다증<br>6) 백혈병   |
| 차. 신경 계통      | 1) 다리·머리·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앉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<br>2)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<br>3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<br>4) 두개골 이상,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(신경 이나 신체증상)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<br>5) 뇌 및 척추종양,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<br>6) 전신성·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<br>7)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<br>8) 만성 진행성·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(유전성 무도병, 근위축성 측색경화증, 보행 실조증, 다발성 경화증) |
| 카. 사지         | 1)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<br>2) 난치의 뼈·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<br>3)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(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)  |
| 타. 귀          | 귀의 청력이 500Hz, 1000Hz,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 |
| 파. 눈          | 1) 두 눈의 나안(裸眼)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.5 이하인 경우(다만, 한쪽 눈의 시력이 0.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.8 이하인 경우(다만,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.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.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<br>2) 시야의 협착이 1/3 이상인 경우<br>3)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, 활동성,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,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<br>4)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<br>5) 색각이상(색약 및 색맹)         |
| 하. 정신 계통      | 1)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지적장애<br>2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<br>3)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<br>4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<br>5) 뇌전증<br>6) 수면장애(폐쇄성 수면 무호흡증, 수면발작, 몽유병, 수면 이상증 등)이나 공황장애   |